

2010년도 국회9급 속기직 행정법총론 해설

1. ②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김종석행정법총론 130면 (4) ① 참조]

답 ②

2.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만, 이러한 위임이 없이 제정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대법원 1995.10. 17, 94누 14148 전원합의체) 【자동차운행정지 가처분취소 등】 [김종석행정법총론 301면 관련판례1]

답 ④

3. 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의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23, 84도2953) 【의료법위반】 [김종석행정법총론 248면 관련판례1]

답 ⑤

4. ③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12, 90누 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1208면 상단 관련판례]

답 ③

5. 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반면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답 ②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사례이다. (대법원 1992.9.22, 91누828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125면 관련판례3]

답 ③

7. ㄱ. 판례는 버스운송사업면허를 특허로 보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2.6.28, 2001두100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368면 관련판례3]

ㄴ.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특허부여와 특허기간갱신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5.9, 88누4188) 【보세장치장 설영특허갱신 불허가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409면 관련판례1]

ㄷ.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9.12, 88누9206)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369면 관련판례5]

답 ①

8. ③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8.8.21, 2007두13845) 【토지보상금】 [김종석행정법총론 505면 관련판례2]

답 ③

9. ③ 고의·과실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말하는 것이지 국가 등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고의·과실, 즉 배상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고, 국가 등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게을리함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김종석행정법총론 880면 (4) ③ 참조]

답 ③

10.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김종석행정법총론 1048면 (4) 참조]

답 ①

11.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5.12, 94누 13794) 【시정명령 등 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1114면 관련판례8]

답 ⑤

12.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면교부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김종석행정법총론 585면 레벨업]

답 ④

13.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7조 제2항).[김종석행정법총론 950면 ② 참조]

답 ②

14. ⑤ 공표는 행정쟁송으로 취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법한 공표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권익구제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공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김종석행정법총론 812면 2. 참조]

답 ⑤

15.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4.17,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1218면 비교판례]

답 ⑤

16. ④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4.28, 2005두14851)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김종석행정법총론 1055면 관련판례2]

답 ④

17.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김종석행정법총론 780면 2. (1) 참조]

답 ②

18. ⑤ 모든 불확정개념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법개념이므로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388면 및 386면]

답 ⑤

19. ①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1조).[김종석행정법총론 625면] 행정의 신속성은 동법의 목적이 아니다.

답 ①

20. ④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7.24, 2001헌가25) 【위헌제정】 [김종석행정법총론 795면 관련판례1]

답 ④